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3.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3. 11

다. 상정일자 :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2001. 12. 29일 법률제6549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정함.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함.
- 농업소득세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함.
-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은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
- 담배소비세의 가산세 조항중 “환급”을 “환부”로 용어를 정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1. 12. 29일 법률 제6549호로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춘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함과 더불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으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 신설 되었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